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7길 14 엘림빌딩 3층 전화 (02)523-9752 팩스 (02)766-6025
http://www.pharmacist.or.kr . E-mail:kpkyp@chol.com

문서번호 건약210312-01
시행일자 2021. 03. 12..
담 당 이동근 사무국장
수신부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 목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의견서

1. 안녕하십니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입니다.

2.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이동주 의원이 3월 3일 대표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3.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붙임자료 참고)
- 성명: 건강사회를위한 약사회 (대표: 박미란)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7길 14 엘림빌딩 3층
- 전화번호: 02) 523 - 9752

◎ 붙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표 박미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1. 의견

이번 입법예고된 개정법률안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여러 지적재산권과 건강권의 충돌을 목도한 가운데 입법예고된 것임. 과도한 지재권의 강조는 인권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건강권의 보호를 방해하고, 현행 의료체계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선결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법으로 적극 찬성함.

2. 이유

- 인간관점에서의 공중의 위생뿐 아니라 생태적 관점의 위협을 줄 수 있는 기술을 특허대상 제외할 필요가 있음.
 -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한 현행 법은 60년 동안 개정되지 않고 있음.
 -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 및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간중심적 관점이 아니라 생태중심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높아지고 있음. 가령, DDT와 같은 강력한 제초제의 발명은 공중의 위생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발명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게 제한해야 함.
- 의료산업화가 고도화되면서 의료행위를 특허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기존의 특허청 예규인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을 변경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행정규칙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여 명확하게 제한하고 문제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의료를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회로 급변함에 따라 앞으로 의료행위를 특허 청구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는 도전을 받을 것임. 하지만 치료나 진단방법이 산업상 이용가능한 특허대상성을 인정하면, 의료인은 환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특허침해를 우려하여 치료방법을 제한적으로 고려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음.

- 환자 입장에서 필수적 의료행위가 특허보호를 이유로 사용을 거부되거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은 인권적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움. 또한 특허로 독점적 지위를 획득된 의료기술은 치료비 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권 (강제실시권)의 강화가 필요함.

- 특허법에 따른 강제실시는 정부의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이냐에 대한 불명확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캐나다 및 독일 연방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공중보건위기에 보건부 장관이 공공복리를 위해 또는 안보를 위해 강제실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한 바 있음.
- 정부 사용의 핵심은 일방 강제실시와 달리 사전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데 있음. 특히, 코로나19사태와 같은 감염병 위기에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기 위한 규정 정비가 필요함.